

量田史의 재검토

— 벽사 이우성의 사적 토지소유론과 관련해서

宮嶋博史*

- | | |
|--------------------------|-------------------------------------|
| I. 문제의 소재 | IV. 토지 국유·사유론의 대립을 넘어서-
결론을 대신해서 |
| II. 신라·고려시대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 | |
| III. 조선시대 토지 파악의 실태 | |

• 국문초록

벽사 이우성은 신라, 고려시대에 사적 토지 소유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일찍 주장했고 그 주장이 지금 한국 학계의 주류적 견해로 자리 잡고 있다. 토지의 국유, 사유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소유 대상인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는 농업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구와 토지의 관계에 따라서 그 경제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토지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밝히려고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신라, 고려시대의 사료에서는 한 필지의 면적이 1結을 넘는 큰 토지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가 量田을 할 때 경지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경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같이 한 필지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 파악 방식은 조선시대에서도 답습되었고 1634년에 실시된 甲戌量田에 와서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이 이처럼 변화한 이유는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지의 안정화와 常耕化,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의 稀少財化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토지 소유의 문제도 위와 같은 토지의 변화를 시야에 넣고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에 비해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했던 16세기 이전에는 국유, 사유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토지 소유를 역사 발전의 산물로만 보는 입장도 극복되어야 한다.

주제어 : 토지 소유 논쟁, 量田의 역사, 結負制, 국가의 토지 파악, 토지의 稀少財化

I. 문제의 소재

벽사 이우성의 다양한 연구 중에서 사회경제사에 관한 연구는 작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신라·고려시대의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와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에 관한 연구¹⁾가 그것들인데, 두 가지 분야의 연구 모두가 연구사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논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분야의 연구 중 전자, 즉 신라·고려시대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를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1965년에 발표된 「新羅時代の 王土思想과 公田-大崇福寺碑 및 鳳巖寺 智證碑의 一考」²⁾와 「高麗의 永業田-永業田의 私有的 性格」³⁾은 그때까지 지배적인 견해였던 토지 국유론을 비판해서 신라·고려시대에 사적 소유지가 존재했었다는 주장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연구로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진 논문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통일신라시대에 사적 토지 소유가 성립했다는 견해가 주류적인 견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⁴⁾이 이들 논문의 연구사적인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적 토지소유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토지 소유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연구를 비판해서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 새로운 관점이란 소유의 대상인 토지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신라·고려시대의 사료에 나타나는 토지는 거의가 結 단위의 토지로서 등장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토지 파악 단위인 結負는 10把=1束, 10束=1負, 100負=1結로 결 이하 부, 속, 파이라는 단위가 사용되었지만 부 이하의 단위로 토지를 표시한 사료가 대단히 한정적이라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만, 결 단위로만 토지가 파악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 및 量田 방법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토지 자체에 주목하려고 하는

1) 이우성, 「18世紀 서울의 都市의 樣相-燕巖學派・利用厚生學派의 成立背景」, 『鄉土서울』 1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3.

2)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刊行委員會 편, 『佛教史學論叢』, 중앙도서출판, 1965.

3) 『歷史學報』 28, 역사학회, 1965.

4) 통설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것으로 金容燮, 「土地制度의 史的 推移」, 『韓國中世農業史研究-土地制度와 農業開發政策』, 지식산업사, 2000을 들 수 있다.

이유도 여기에 있다.

II. 신라 · 고려시대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

1. 토지 파악 방식의 특징

이우성의 논문 「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에서는 사유지로 생각되는 토지로서 崇福寺의 토지 200결과 鳳巖寺의 토지 500결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그 이외에 眞如院의 토지로서 柴地 15결, 栗枝 6결, 坐位 2결도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거론된 토지들은 다 같이 결수로만 토지의 면적이 파악되고 있어서 부 이하의 면적 단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토지는 진여원의 좌위 2결을 제외하면 몇 군데에 분산된 토지를 합친 면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면 각 토지의 면적은 얼마였는지,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전혀 의식되지 않았다.

국가가 개별 토지를 파악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편의적으로 조선시대의 호칭에 따라서 量案이라고 부른다면⁵⁾ 양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신라 · 고려시대에 있어서 양안에 개별 토지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료는 대단히 한정적이다. 먼저 신라시대에 관해서 보면, 「開仙寺 石燈記」가 유일한 사례인 것 같다. 이 사료는 전라도 담양에 있었던 개선사에서 석등을 세우고 그 석등을 유지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 구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⁶⁾

龍紀3년(891) 辛亥 10월일에 僧 入雲이 京租 100석으로 烏乎比所里의 公書와 俊休 두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分(其分)인 石保坪의 大業의 渚畚 4결(5畦이다. 東

5) 국가가 토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기록한 장부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 양안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6) “龍紀三年, 辛亥 十月 日, 僧入雲, 京租一百碩, 烏乎比所里, 公書, 俊休二人, 常買其分, 石保坪大業, 渚畚四結(五畦, 東 令行土, 北 同土, 南 池宅土, 西 川), 奧畚十結(八畦, 東 令行土, 西 北同土, 南 池宅土).” 이 사료의 釋文과 해석에 대해서는 李榮薰, 「開仙寺石燈에 새겨진 8~9세기 新羅의 토지제도」, 『古文書研究』 50, 한국고문서학회, 2017 참조.

은 令行土, 北은 同土, 南은 池宅土, 西는 川이다)과 奥畝 10결(8畝이다. 동은 令行土, 서와 북은 同土, 남은 池宅土이다)을 正常으로 매입(常買)하였다.⁷⁾

이 사료에서는 구입된 두 개 토지에 대해 그 소재지(石保坪)와 경작자(大業), 위치와 지목(渚畝, 奥畝), 結數, 畝數, 四標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이들 토지를 등록한 양안의 기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두 개 토지는 각각 한 筆地로서 양안에 등록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두 개 토지가 4결과 10결이라는 대단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신라시대 1結의 면적이 얼마였는지에 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큰 견해차가 있기는 하지만,⁸⁾ 가장 좁게 추정된 1,450坪을 채택하더라도 4結이라면 5,800평, 10結이라면 14,500평이 되는 셈이다. 물론 각 토지는 몇 개 畝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필지의 면적으로서는 엄청나게 큰 면적이다.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신라시대에 이러한 광대한 논이 존재했었는가, 이것이 첫째 의문점이다.

다음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개 토지의 면적이 4結, 10結로 되어 있는데, 結의 하부 단위인 負와 束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우연히 4結과 10結이라는 면적을 가진 토지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여기서는 負와 束이라는 단위가 안 보이지만 신라시대에 이들 단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본 正倉院에 소장되고 있는 유명한 신라 帳籍문서에는 각 마을의 田畝 면적이 束 단위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그러면 위 사료에 나오는 두 개 토지는 왜 4결과 10결이라는 크기였는가, 이것이 둘째 의문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추구하기 전에 다음으로 고려시대에 관해서 보기로 하자. 고려시대의 경우도 양안 자체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료에 나오는 토지 기록에서 개별 토지가 양안에 어떻게 등록되었는가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고려시대의 사료로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高城三日浦 埋香碑’의 비문이다.

7) 京租는 國都에 보내는 租이라는 뜻으로, 왕이 그 조를 개선사에 하사한 것이다. 畝는 경지의 내부 구획을 나타내는 말로, 오늘날의 배미(夜味)와 같은 뜻이다.

8) 李仁在, 「新羅統一期の 結負制」, 『東方學志』 10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8.

이 매향비는 1309년에 세워진 것으로, 그 4面에는 彌勒菩薩의 공양을 위해 조직된 寶의 밭천을 위해 施納된 토지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4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

미륵보살을 위한 공양의 밭천으로 땅을 사서 보를 만든다. 보에 양주부사 朴琬은 北反伊員에 있는 진답 2결을 시납하였다(진답 2결은 그 경계가 東과 北쪽은 州軍 소속의 진답, 南쪽은 州軍의 ?, 西쪽은 미륵사의 답이다). 통주부사 金用卿은 襄原代下坪員에 있는 진답 2결과 같은 곳에 있는 진전 2결을 시납했다(진답 2결의 경계는 東과 北쪽은 진답과 大堤가 있고, 南쪽은 길, 西쪽은 白丁千達의 起畓이다. 진전 2결의 경계는 東과 南쪽은 제방, 西쪽은 황폐된 땅, 北쪽은 鐘伊川이다).

이 사료에 나오는 세 개 토지의 정보 역시 양안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 같이 2結이라는 면적을 가진 토지로서, 개신사 석등기에 보이는 토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이 되는 것은 세 개 땅이 모두가 진의 상태인데, 정말로 진의 상태였다면 그러한 토지를 시납하는 일이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가졌는지의 문제이다.

고려시대 양안에 토지가 어떻게 등록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서 ‘淨兜寺 造塔 形止記’를 들 수 있다. 이 사료는 1031년에 정두사에서 석탑을 세울 때 만들어진 것으로, 석탑을 건조하는 토지에 관해서 양안에 그 토지가 어떻게 등록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두 개 토지가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아래와 같다.¹⁰⁾

철의 垡地와 진, 길이 27步, 넓이 20步이며 北쪽은 能召의 진, 南과 東쪽은 수로, 西쪽은 葛頸寺의 전이다. 實積은 540步이므로 結數는 49負 4束이 된다.

9) “勒?買?寶, 襄州副使朴琬施納, 北反伊員畓二結陳(東北 州軍陳畓, 南 軍?, 西 彌勒寺畓), 通州副使金用卿施納, 襄原代下坪員畓二結陳(東北 陳畓, 大冬音, 南 道, 西 白丁千達起畓), 同員田二結陳(東南 吐, 西 陳地, 北 鐘伊川).” 이 사료의 석문과 해석에 대해서는 鄭晁日, 「麗末鮮初의 埋香碑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참조.

10) “代下田, 長廿七步, 方廿步, 北 能召田, 南東 渠, 西 葛頸寺田, 承孔 伍百肆拾, 結得 肆拾玖負肆束, 同寺位 同土, 犯南田, 長拾玖步, 東三步, 三方渠, 西 文達代, 承孔 百四, 結得 玖負伍束.” 이 사료의 석문과 해석에 대해서는 南豐鉉, 「淨兜寺造塔形止記의 解讀」, 『古文書研究』 12, 한국고문서학회, 1997 참조.

(다른 토지는) 淨兜寺의 位土이며 위 토지의 南쪽에 있는 전이다. 길이 19步, 東은 3步(역주: 이 부분은 문자가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이며 東, 南, 北쪽은 수로, 西쪽은 文達의 집터인데, 實積은 104步이므로 結數는 9負 5束이 된다.¹¹⁾

이 사료에 나오는 두 개 토지의 경우, 위에서 본 석등기, 매향비와 달리 토지의 면적이 負, 束 단위까지 파악되고 있다. 또한 두 개 토지의 면적이 1結 미만으로, 좁은 토지였다는 면에서도 위의 사례와 구별된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의문점을 검토할 때도 이러한 토지가 존재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의 결과 신라·고려시대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의 특징으로서, ① 큰 면적의 토지가 한 필지로서 파악되었다, ② 결을 단위로 토지가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③ 그러나 작은 면적의 토지 및 부, 속 단위로 파악된 토지도 소수이지만 존재했다 등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은 왜 생겼는가, 다음으로는 이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2. 큰 면적 파악의 요인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신라·고려시대의 양안에 기재된 토지는 한 필지로서 큰 면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왜 생겼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시의 양전법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먼저 이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여기서의 과제이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와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耕作遺構에 관한 발굴, 조사의 성과들이다. 경작 유구의 발굴, 조사는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특히 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진전되었다. 시대적으로는 농경의 태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포괄하고 있고, 논보다도 밭 유구가 많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논 유구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논 유구에 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소개한 논문으로서 곽종철·이진주의 「우리나라 논유구 집성」¹²⁾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42개의 논 유구가 소개되었는데,

11) 이 자료에서 實積과 結負數의 관계는 나중에 소개하는 文宗23년의 方 33步를 1結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 형지기가 작성된 1031년 당시에도 그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2) 곽종철·이진주, 「우리나라 논유구 집성」, 『韓國의 農耕文化』 6, 경기대 박물관, 2003.

그중에서 논 한 구획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유구는 11유구이다. 그것들을 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울산 옥현유적: 청동기 전기(B.C. 7~6C) 1평 미만에서 3평 전후
동상 : 삼국(A.D. 6C후) 32~44평정도
동상 : 조선후기(A.D. 16~17세기) 49.7~106.7평정도
- ②울산 반리유적: 청동기 전기말 2.7~3.4㎡
- ③밀양 금천리유적: 무문 초기 5~6평정도
- ④진해 자은동유적: 조선후기(18C말~19C중반) 7평
- ⑤창원 반계동유적: 삼국(A.D. 6C~7C) 13~120㎡전후
동상 : 삼국(A.D. 6C~7C) 46~87㎡전후
- ⑥창원 가음정동유적: 삼국 105.5㎡
- ⑦진주 장흥리유적: 삼국 1평미만
- ⑧대구 서변동유적 가층: 삼국(6C) 약 80평
동상 나층 :삼국(6C) 약 80평
- ⑨논산 마전리유적: 청동기 17.1~73.6㎡
- ⑩부여 노화리유적 제2경작면: 삼국 78.5~93.72㎡
동상 제1경작면: 청동기 7.5~19.4㎡
- ⑪부여 궁남지유적: 삼국(A.D.6C중후반~7C전반) 4.5평~약 10평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삼국시대보다 이전의 유구에서는 논 한 구획의 면적이 아주 좁다는 것, 그리고 삼국시대에 와서 그 면적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유적에서 시대를 달리하는 유구가 발굴된 경우(①과 ⑩의 사례), 그 시대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시대에 따라서 논 한 구획의 면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형원의 연구¹³⁾도 흥미롭다. 이형원에 의하면 논 한 구획의 면적이 부여 구봉리·노화리 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가 9.6㎡, 삼국시대가 54.1㎡, 조선시대가 957.6㎡이며, 진주 평거동 유적의 경우 청동기시대가 15.0㎡, 삼국시대가 738.3㎡, 조선시대가 1,637.0㎡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13) 이형원, 「百濟 漢城期の 水田에 대하여-화성 송산동 농경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 10(2), 중부 고고학회, 2011.

밭과 비교할 때 논은 특징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주위를 논두렁에 의해 둘러싸야 한다는 것과 땅이 평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물이 균등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평평하게 조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농구밖에 없었던 청동기시대 논 한 구획의 면적이 협소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와서 철제 농구가 점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한 구획의 면적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삼국시대에 와서 논 한 구획의 면적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최대 면적은 진주 평지동 유적의 738.3㎡이며 나머지는 이것보다 훨씬 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 앞에서 본 개신사 석등기에 보이는 4結과 10結이나 되는 광대한 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쉽게 납득이 안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두 개 토지는 몇 개의 작은 구획(畦)으로 구성된 논이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해도 그렇다. 이영훈에 의하면 석등기에 나오는 논은 넓은 평야가 아니라 좁은 溪間地에 위치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리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한 구획이 4結과 10結의 논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은 고려시대의 삼일포 매향비에 나오는 2結의 면적을 가진 두 개 논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개신사 석등기와 삼일포 매향비에 나오는 토지들은 왜 2結, 4結, 10結 등 큰 면적의 토지로서 양안에 등록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경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양전의 대상이 되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의 양전에서는 그러한 양전 방식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예로서 다음 사료를 소개한다.

戶曹에서 계하기를, 각도의 전지를 묵은 것이나 개간한 것을 구별할 것 없이 모두 측량해서 문서를 만들되, 오래된 묵은 토지는 별도로 측량해서 續文籍을 만든다.¹⁶⁾

14) 벼도 호흡을 해야 하는데, 10cm까지 침수하게 되면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이를 이내에 죽어버린다고 한다.

15) 일본에서도 대단히 좁은 면적의 논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러한 논을 小區劃水田이라고 부르고 있다. 都出比呂志, 「古代水田の二つの型」, 『展望アジアの考古學: 樋口隆康教授退官記念論集』, 新潮社, 1983 참조.

이 사료에 나타나듯 세종대에는 진전도 양전의 대상이 되었었으며 오래된 진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 실태는 다음 사료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당초 양전할 때 간전이 1부이고 옆에 9부의 진전이 있으면 10부로 매고, 간전이 10부이고 옆에 90부의 진전이 있으면 1結로 매어서 10여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¹⁷⁾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간전이 전체의 10%밖에 안 되는 토지도 다 양전 대상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는 양전 대상에 진전이 많이 포함되어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전국의 田結數가 도별, 군별로 나타나는데, 합계 160만결이라는 전결수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수효는 조선 후기와 비교해서 훨씬 큰 수효이지만, 이 이유는 위와 같은 양전 방법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세종대의 이러한 양전 방식은 이때 처음으로 채용된 것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양전 방식의 큰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당시 그러한 논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신라시대의 양전에서는 어떠했을까?

신라시대의 양전이 경작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한 사람은李喜寬이다. 그는 신라 장적문서를 검토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각 마을의 田畝結數와 田租 수취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에는 실제 경작지만이 아니라 休閒地나 陳田을 포함한 총 전답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전조가 부과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¹⁸⁾

농업 발전의 단계가 낮은 시기에는 耕地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매년 안정적인

16) 『世宗實錄』 권42, 10년 8월 25일 甲辰, “戶曹啓, 各道田地, 勿分陳墾, 竝皆打量成籍, 其久陳田, 則別行打量, 續成文籍.”

17) 『世宗實錄』 권86, 21년 9월 18일 癸亥, “當初量田之時, 墾田一卜, 傍有九卜之陳, 則繫以十卜, 墾田十卜, 傍有九十卜之陳, 則繫以一結, 至于十餘結, 皆然.”

18) 李喜寬, 『統一新羅土地制度研究』, 일조각, 1999, 37면.

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한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양전을 한다면 墾田과 陳田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개신사 석등기에 4結이나 10結이나 되는 토지가 한 필지로서 나타나 있는 것도 이러한 양전 방식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석등기에 나오는 토지는 公書, 俊休이라는 하급 관료에게 지급된 官僚田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신라시대 관료전처럼 국가가 특권층에게 토지를 지급할 때 진 상태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당나라시대 均田制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당나라 균전제에서 전형적인 특권적 토지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官人永業田인데, 그것은 正一品 60頃에서 九品 2頃에 이르기까지 品階에 따라서 관인영업전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從五品 이상의 관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전으로, 寬鄉, 즉 인구에 비해 토지가 풍부한 지방에서 無主의 荒地를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었다. 이렇게 무주 황지를 영업전으로 지급한 이유는 開墾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당나라 율령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 즉 743년에 실시된 墾田永年私財法이 그것인데, 이 법에 의하면 品階에 따라서 開墾地 지급의 上限 면적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백성에게 지장이 없도록 無主의 荒地를 개간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당나라의 관인영업전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당 율령을 참조하면서 채택된 처치였던 것이다.¹⁹⁾

따라서 신라에서도 관료전 같은 특권적 토지 지급에 있어서는 당나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陳地, 荒地를 포함한 토지가 지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10결이나 4결 등 결 단위로 토지가 양안에 등록된 이유도 쉽게 납득이 갈 것이다.

이러한 토지 지급 방식은 신라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給田제도인 田柴科에서는 주지하듯이 田地와 더불어 柴地가 지급되었는데, 시지는 단순히 땔감을 얻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 개간이 기대되는 토지이기도 했다.²⁰⁾ 그뿐만 아니라 전시과의 급전 방법은 科田法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과전법에서 지급된 토지의 결수가 고려시대 마지막의 전시과인 1076년의 更定

19) 당나라와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吉田孝, 『律令國家と古代の社會』, 岩波書店, 1983, 267~269면 참조.

20) 洪順權, 「高麗時代의 柴地에 관한 고찰」, 『震檀學報』 64, 진단학회, 1987.

田柴科의 지급 결수를 바탕으로 1311년에 책정된 祿科田의 지급 결수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표 1〉 更定田柴科, 祿科田, 科田法の 土地支給 規定 比較

更定田柴科의 土地分給																			
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支給額數(結)	田地	100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35	30	25	22	20	17
	柴地	50	45	40	35	30	27	24	21	18	15	12	10	8	5				
	合	150	135	125	115	105	97	89	81	73	65	57	50	43	35	25	22	20	17
祿科田의 土地分給																			
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支給田地(結)		150	130	125	115	105	97	89	81	73	65	57	50	43	35	25	20	15	10
科田法の 土地分給																			
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支給田地(結)		150	130	125	115	105	97	89	81	73	65	57	50	43	35	25	20	15	10

출전: 『高麗史』

〈표 1〉은 更定 田柴科의 급전 결수와 祿科田 및 科田法の 급전 결수를 비교한 것인데, 녹과전의 급전 결수는 대체로 경정 전시과의 전지와 시지를 합친 것이었으며, 과전법의 급전 결수는 녹과전의 지급 결수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전으로 지급된 토지에는 경작지가 아닌 진 상태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과전법의 조문 중 다음 부분은 이 사실을 잘 말해 준다.

경기의 공전, 사전의 사표 내에 황한지가 있으면 민들이 나무를 베고 가축을 기르고 어업과 수렵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것을 금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물을 것이다.²¹⁾

이상 검토한 것처럼 신라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양전에서는 경작 중의 토지와 더불어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토지도 같이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양전이 실시되었던 이유로서는 다음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인구에 비해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連作이 가능한 토지가 일반적이지 못해 불규칙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는 토지가 많았다는 것이다.

21) 『高麗史』 권78, 食貨1, 祿科田, “京畿公私田四標內, 有荒閑地, 聽民樵牧漁獵, 禁者理罪.”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경우, 개별 토지를 엄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은 희박했으며, 토지의 開墾을 장려하는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불규칙적으로 경작이 이루어지는 토지가 많이 존재할 경우 墾田과 陳田의 구별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3. 結 단위 토지 파악 방식의 요인

신라·고려시대의 양안에는 한 필지가 結 단위로 토지가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위에서 검토한 큰 면적의 토지 파악 방식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큰 면적 단위로 토지가 파악된다도 해도 그것이 반드시 結 단위가 되는 필연성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중에 소개하듯이 조선시대 양안에는 한 필지가 1결 몇 십부 등 큰 면적의 토지이면서도 結 단위가 아닌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 사료이다.

(문종) 23년에 양전보수를 정하였다. 토지 1결은 방 33보(6촌은 1분이고 10분은 1척이고 6척은 1보이다), 2결은 방 47보, 3결은 57보 3분, 4결은 방 67보, 5결은 방 73보 8분, 6결은 방 80보 8분, 7결은 방 87보 4분, 8결은 90보 7분, 9결은 방 99보, 10결은 방 104보 3분이다.²²⁾

이 자료는 문종23년(1069년)에 정해진 규정인데, 1결의 면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서 많은 연구자에 의해 검토되어 왔다. 이 규정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결의 면적이 方33步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1負의 면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는 사실이다. 방33보를 1결로 한다면 1부의 면적은 방3.3보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1보가 6척이기 때문에 3.3보는 3보와 1.8척이 되는 셈이다.

22) 『高麗史』 권78, 食貨1, 經理, “(文宗)二十三年, 定量田步數, 田一結 方三十三步(六寸爲一分, 十分爲一尺, 六尺爲一步), 二結 方四十七步, 三結 方五十七步三分, 四結 方六十六步, 五結 方七十三步八分, 六結 方八十步八分, 七結 方八十七步四分, 八結 方九十步七分, 九結 方九十九步, 十結 方一百四步三分.” 이 사료에 나오는 割註 부분의 해석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1步=6尺=10分으로 해석해서 원문의 ‘十分爲一尺’이 ‘十分爲一步’의 誤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1부의 면적이 측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정두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측량은 보 단위로 이루어졌고, 위의 문종 23년 의 규정에서는 1보의 10분의 1인 분 단위로 측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 단위의 넓은 토지를 측량할 때 분 단위까지 정밀했다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가 되는 것은 세종실록에 나오는 고려시대 양전에 관한 기사이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앞서 기사년 이전의 양전 때에는 3보 3척의 사방 둘레 로서 1부를 삼고, 33보의 사방 둘레로서 1결로 삼았던 것을 을유년(1405년)에 다시 측량할 때에는 3보 3척의 부수가 33보의 결수에 서로 맞지 않는다 하여 다시 3보 1척 8촌으로 1부를 삼으니 1결의 수효가 12부 4속이나 감축되고 이로 인하여 결, 부의 수가 대단히 차가 나게 되오니 청하전대 기사년의 예에 의하여 3보 3척의 사방 둘레로 1부를 삼고 그 부수에 준하여 35보를 1결로 삼도록 측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²³⁾

이 사료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고려 후기의 양전에서는 1부의 면적을 기초로 한 측량이 실시되었다는 것, ② 1부의 면적은 방 3보 3척이었다는 것, ③ 이것은 3.3보를 3보 3척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측량 방법이었다는 것, ④ 1405년의 양전에서는 3.3보를 3보 1.8척으로 수정해서 측량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1결의 면적이 12% 이상 감소되고 지세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 ⑤ 지세 증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때부터는 방3보 3척을 1부, 방35보를 1결로 측량하도록 변경되었다는 것, 이상이다. 그래서 이후 이 결정에 따라 방3보 3척, 즉 방21척을 1부로 삼아서 양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양전의 기초 단위가 1부로 변경되고 척을 기준으로 측량이 실시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3.3보를 3보 3척으로 잘못 해석되었는데, 이런 착오는 국가가 방33보를 1결로 한다고 규정했을 뿐, 1부의

23) 『世宗實錄』 권42, 10년 10월 初1일, 辛巳, “戶曹啓, 前此己巳年以上量田時, 三步三尺周廻爲一負, 三十三步四方周廻爲一結, 乙酉年改量時, 以爲三步三尺負數, 於三十三步結數不准, 而改以三步一尺八寸爲一負, 一結之數, 減至十二負四束, 因此結負之數差重, 請依己巳年例, 三步三尺周廻爲一負, 令其負數相准, 三十五步爲一結, 量之, 從之.”

면적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잘못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 전기까지의 양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을 단위로 토지가 파악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신라·고려시대의 사료에서 토지의 면적이 결 단위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러한 양전 방식의 소산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문종 23년의 자료에서 2결에서 10결까지의 면적이 방~보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실제로 이러한 토지 파악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야 한다.²⁴⁾ 그리고 결 단위의 토지 파악이 가능했던 이유가 경지와 비경지를 구분하지 않는 양전 방식에 있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겠다.

4. 負·束 단위 토지 파악의 특징

신라·고려시대의 사료에서 토지의 면적이 대부분 결 단위로 나타나지마는, 소수나마 결 이하의 단위, 즉 부와 속으로 면적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 파악은 왜 존재했었는가?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부나 속 단위로 토지가 파악되고 있는 사료는 정두사 조탑 형지기의 경우는 일반 농지가 아니라 택지(代下田, 位土)였으며, 신라 장적 문서의 경우 국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문서였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부, 속 단위로 토지가 파악되는 사례가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이다. 택지의 경우 면적 자체가 크지 않은 토지가 많다는 것, 거기에 황무지가 포함되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 등의 이유 때문에 결 이하의 단위로 토지가 파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신라 장적 문서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상도 慶山 所月里의 유적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木簡 자료이다.²⁵⁾ 소월리 목간에는 골짜기 단위로 11개의 경지에 대해 전답의 구별과

24) 지금까지는 2결 이하의 규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결 단위의 토지가 다 정방형 형태로 파악되었다고 해석하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었다고 봐야 된다.

25) 이 목간에 대해서는 이용현, 「慶山 所月里 文書 木簡의 성격·村落 畵田基礎 文書」, 『木簡과 文字』 27, 한국목간학회, 2021 및 하시모토 시게루, 「경산 소월리 목간의 성격에 대한 기초적 검토-신라 촌락문서와의 비교 및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29, 2022 참조.

면적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논·밭의 경우 각각의 면적은 7결, 1결, 3결, 40부, 40부, 7결, 5결 ?부이며, 밭의 경우는 3부(3.5부?), 7부, 7부, 5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면적은 각 골짜기에 존재한 농지를 측량한 결과로 얻어진 면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논·밭의 경우 결 단위로만 면적이 파악되는 경우가 네 군데나 될 뿐만 아니라 부수까지 파악되는 경우는 다 40부이라는 같은 부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밭의 면적은 우연히 얻어진 결과라고는 믿어지지 않으며 역시 경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밭의 경우는 논과 달리 다 1결 이하의 작은 면적이며 부 이하의 단위인 속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소월리 목간의 이러한 토지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주목되는 문제는 이들 목간이 마을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사실이다. 이 목간을 자세히 연구한 이용현은 목간의 성격을 ‘村落 畵田 基礎 文書’로 파악해서 마을 내의 농지를 조사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것이라면 신라 장적 문서와 비슷한 성격의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두 문서 다 국가에 보고하기 위해 지방 행정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부, 속 단위까지 토지 면적이 파악된 이유도 이러한 문서의 성격과 관계되지 않는지, 앞으로 더욱 추구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Ⅲ. 조선시대 토지 파악의 실태

신라·고려시대 국가의 토지 파악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조선 시대에 와서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 문제를 구명하는 것이 여기서의 과제이다.

1. 15세기까지

잘 알려져 있듯이 고려 최말기인 1389년의 己巳年 양전을 비롯해 14세기 말에서 15세기 말에 걸쳐서는 양전이 자주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까지의 양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양안에 개별 토지가 어떻게 등록되었는

가를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한정적이다. 그중에서 다음에 소개하는 「權玠許與文記」(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 출판부, 1981년, 131면)는 15세기 양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이다.

이 문서는 慶北·安東의 향반인 權玠가 1475년에 사위 河源(그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河緯地의 조카이다)에게 토지와 노비를 分財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나오는 토지는 아래와 같다.

郵井田, 臣字一田, 五日畊, 一結三十ト(畊은 耕의 古字, ト은 負의 略字)

二田, 三日畊, 八十五ト

伏字四田, 二日畊, 七十三ト

首字九田, 五日畊, 一結十八ト

이 자료는 字號만이 아니라 第次(地番)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서 한국 양전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분재대상이 된 네 개 토지 모두가 발인데, 개선사 석등기, 삼일포 매향비와 비교해서 좁아졌지만, 그래도 1結을 훨씬 넘는 면적을 가진 토지가 양안에 한 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분재된 토지에 대해 이 문서에서는 ‘右田坊藪陳反并以次知畊作事’이라는 지시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들 토지에는 경작지(田坊) 이외에 숲(藪)과 陳의 토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위에서 본 것 같은 세종대의 양전 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양안에 등록된 토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료는 1469년의 「田養智妻河氏粘連文記」(李樹健편저,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 출판부, 1981, 481~483면)이다. 이 문서는 전양지의 처인 하씨가 동생, 삼촌 등에게 노비와 토지를 분재한 내용을 立案했을 때 작성된 것인데, 27필지의 토지가 분재 대상으로서 기록되고 있다. 전답 합쳐서 11結 12負 8束의 면적이므로 한 필지당 결부수는 41.2負가 되는 셈이다(표 2) 참조). 한 필지당 평균 면적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결을 넘는 토지가 세 필지 포함되어 있어서 위의 權玠 허여문기와 유사하다.

〈丑 2〉 田養智妻河氏粘連文記

所在	地目	負數
馬城旨	田	23.4
大川洞	田	15
	田	15
禪院前	田	5.2
連里	田	10.8
大川洞	代	25.5
吐山	田	128.9
達外	畚	27.3
无老	畚	47.6
馬城旨	田	126.8
大川洞	田	16.7
川邊	田	15
召溪	畚	97.6
	畚	22
牛池	田	126.1
毛毒浦	畚	13.8
无老	畚	60.4
	田	61.5
無老	畚	47.6
	畚	28
无老	畚	38.2
乙坪	田	24.5
	畚	13
	田	1.5
无老	田	46.5
大川洞	代	5.3
儀光	田	69.6
	(합계)	1112.8
	(평균)	41.2

출전: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이 시기의 사료로서 한 가지 더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太祖賜給芳雨土地文書」(정구복 외, 『朝鮮前期古文書集成: 15世紀篇』, 국사편찬위원회, 1997년, 166~167면)을 들 수 있다. 이 문서는 1392년에 태조 李成桂가 장남인 芳雨에게 토지를 사급했을 때 작성된 문서인데, 함경도에 소재한 네 개 토지가 분재 대상이었다. 밭의 경우는 日耕, 논인 경우는 石落只(섬지기)로 그 면적이 표시되어 있으며, 각각 柒日耕, 壹朔貳拾伍日耕(五十五日耕), 柒石落, 貳拾石落이라는 넓은 면적을 가진 토지들이다. 1389년의 己巳年 양전에서는 함경도가 양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의 토지 표시는 아마도 고려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옮겼다고 생각되는데, 양안 상에 이들 토지가 한 필지로서 등록되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상 조선 초기의 사례를 보아도 양안에 등록된 토지 중에는 한 필지의 면적이 1結을 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양전 방식도 경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는 신라·고려시대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았다고 볼 수 있다.

2. 전환점으로서의 16세기

16세기가 되면 분재기에서도 토지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된다. 그러나 분재기의 기록에서 16세기의 양안에서 개별 토지가 어떻게 등록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역시 대단히 한정적이다. 그러한 가운데 경주 良洞마을에 세거하는 慶州 孫氏 집안의 분재기는 주목할 만하다. 1510년에 작성된 이 가문의 분재기는 분재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 각 토지가 양안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分財記2」, 『古文書集成 118 慶州 慶州孫氏古文書: 正書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년).

이 분재기에는 토지마다 그 토지의 소재지(員), 字號, 第次, 地目, 結負數가 명시되어 있는데, 전답 합쳐서 58필지, 그중 논이 37필지, 밭이 21필지이다. 논인 경우 한 필지당 평균 결부수는 36負이며, 밭은 29負이다(〈표 3〉 참조). 15세기의 사례와 비교하면 필지당 결부수가 약간 감소했고, 1結을 넘는 필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50負를 넘는 필지가 12개 존재하는 것을 보면 다음에 소개하는 17세기의 사례와 비교할 때 큰 면적을 가진 필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丑 3〉 慶州孫氏1510年分財記

所在	字號	第次	地目	負數
玄風	約	76	답	42
斜灘	妙	182	전	29.8
安溪	玆	46	전	40.6
間渠	宣	14내	답	18.4
		14내	답	24
蛇洞	丹	101	답	57.8
	譽	93	답	26.2
	馳	79내	답	21.4
尺兄火	踐	39	답	16.1
豆古	火	91	답	39.2
	果	131	답	35.9
良佐洞	郡	56	전	45.4
	并	94	전	30
		99	전	11.8
根谷	端	205	전	62.6
豆古	火	92	답	22.1
	珠	44	답	20.5
		36	답	52.6
魚見	趙	12	답	19.7
	國	17	답	68.6
柳月伊	皇	197	답	57.6
橋項	漠	55	답	24
良佐洞	郡	55	전	45.9
	并	99	전	10
長明燈	鳥	131	전	31.9
魚見	途	118	답	34.6
		190	답	25
尺兄火	會	62	답	49.8
豆古	李	164	답	70.3

量田史의 재검토

堤村	罪	241	답	63.2
間渠	沙	39	답	41.9
間渠	宣	9	답	25.6
古乃伊	精	95	답	71.5
犬旨	譽	88	답	21.1
尺兄火	土	49	답	11.6
良佐洞	跡	321	가대	23.8
長明燈	鳥	135	전	20.1
株木	九	150	전	5.3
斜灘	作	45	전	33.5
基川	才	129	전	24.6
尺兄火	土	48	답	59.8
		50	답	22.9
古乃	漠	50	답	86.9
豆古	字	24	답	21.8
良佐洞	郡	53	전	49.1
東山	念	25	전	30.5
間渠	沙	39	답	23
古乃	最	89	답	22.1
豆古	李	168	답	8
	精	72	답	23.3
	夜	84	답	21.9
		87	답	52.5
	珠	37	답	28.2
基川	羽	22	전	20.6
回島	火	94	전	72.2
	帝	95	전	7.9
國堂	鳳	41	전	11.1
		42	전	1.6
			(합계)	1939.4
			(평균)	33.4

출전: 『慶州 慶州孫氏古文書: 正書篇』

그런데 이 집안에는 1690년에 작성된 분재기에서도 각 토지에 관한 양안의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分財記27」, 앞의 책). 이 정보는 1634년에 실시된 甲戌量田의 결과 작성된 양안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의 분재기에는 논 15필지, 밭이 10필지가 기록되었으며 그 필지당 결부수는 논 16.9負, 밭 18.4負이다(〈표 4〉). 따라서 1510년의 분재기와 비교하면 필지 당 결부수가 반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慶州孫氏1690年分財記

員	字號	第次	地目	負數
虎鳴	行	45	畓	17.4
士坊	安	51(2)	畓	16.7
胡島	縣	77(西內)	田	25.7
柳月	戶	12	畓	28
胡島	縣	77(東內)	田	33
虎鳴	聖	91	畓	13.6
有今	羽	2作	田	16.7
蛇洞	卿	22	畓	29.4
長命等	縣	43	田	16.1
豆今	水	53	畓	9.6
長命等	家	54	田	5.3
大谷	職	3作	畓	39.7
長命等	家	74	田	9.3
豆今	生	277	畓	15.3
瞻星臺	珠	30	田	41.3
大棗田	達	7	畓	11
豆今	生	262	畓	10.9
豆今	生	2作	畓	25
胡島	縣	31	田	14
胡島	八	16	田	5.4
柳月	卿	2作	畓	9.1
豆今	麗	2	畓	13.9

洛山	此	70	田	17.6
神光	調	11	畝	13.6
			(합계)	437.6
			(평균)	18.2

출전: <표 3>과 같음

이 집안은 분재기만이 아니라 구입한 토지의 매매문기에서도 구입한 토지가 양안에 어떻게 등록되는지를 기록한 경우가 많다. 아마도 토지를 放賣한 사람에게 방매된 토지가 양안에 어떻게 등록되었는가를 명시하도록 요구한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구입한 토지의 한 필지당 결부수의 시기적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16세기 91건, 평균 결부수 17.7부(최대치 78.1부)

17세기 14건, 평균 결부수 12.5부(최대치 15.6부)

18세기 107건, 평균 결부수 8.5부(최대치 27.2부)

역시 구입된 토지의 한 필지당 결부수도 시기가 내려올수록 작아지고 있어서 다른 집안이 소유했던 토지에서도 경주 손씨의 소유지와 같은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한 필지당 평균 면적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생긴 요인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조선 전기의 양전에서는 토지를 正田과 續田이라는 두 개 종류로 나누어서 파악했다(『經國大典』 戶典 量田條). 常耕하는 토지를 正田이라고 하고, ‘或耕或陳’, 즉 경작이 계속 이루어지기가 힘든 토지를 續田이라고 해서 두 가지 토지는 正田丁, 續田丁으로서 완전히 구별되어 양안도 별도로(각각 正田籍, 續田籍이라고 했다) 작성되고 있었다(『太宗實錄』 권4, 2년 9월 6일 丙戌).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정전과 속전의 구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정전 중에도 陳 상태의 토지도 많이 포함되고, 속전 중에도 起 상태의 토지가 포함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양전 방식이 점점 그 문제점을 노정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진전에 대한 수세 문제가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李載堧과 金雙圭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²⁶⁾ 陳田도 양전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세 대상이

되었던 것이 큰 문제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진전까지 포함해서 양전을 한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왜 이 시기에 와서 그것이 큰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16세기에 와서 토지가 稀少財化되기 시작했던 것과 관계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토지가 점점 희소재로 되는 가운데 墾田과 陳田의 차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게 된 것이 진전 수세의 불합리성에 대한 반발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특히 15세기에는 자주 시행되었던 양전이 1530년대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진전에 대한 수세를 기피하려고 진전의 확대가 심각해지기에 이르렀는데,²⁷⁾ 이러한 문제가 17세기의 새로운 양전 방식을 가져오게 한 배경이 되었다.

3. 甲戌量田에 의한 양전 방식의 혁신

1634년에 三南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갑술양전은 조선 후기에 와서 처음으로 실시된 본격적인 양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의 양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실시된 양전으로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 새로운 양전 방식이란 正田과 續田으로 나누어서 양전하는 것과 동시에 진 상태의 토지도 구별 없이 양안에 등록했던 방식을 폐기해서 起와 陳의 구별을 양안에 등록해서 진의 토지에 대한 면세를 인정하는 것이었다.²⁸⁾ 즉 正田과 續田을 구별해서 양안 자체를 따로 작성했던 방식에서 토지를 起耕田, 陳田, 續田으로 구별해서 파악하되, 모든 토지를 일률적으로 양안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甲戌量田에서 이러한 변화가 생긴 배경에는 앞에서 지적한 16세기의 陳田 수세 문제가 있었을 것이며, 보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603, 4년에 실시된 癸卯量田이었다고 생각된다. 癸卯量田은 주지하듯이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급하게 실시된 양전으로, 時起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때 起 상태의 토지와 陳 상태의 토지를 구별하는 양전 방식이 처음으로 실행되었고 그것이 甲戌量田에서도 적용되었다고

26) 李載鸞, 「16세기의 量田과 陳田收稅」, 『朝鮮前期 經濟構造研究』,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 金雙圭, 「朝鮮前期의 陳田收稅問題」, 『歷史教育』 66, 역사교육연구회, 1998.

27) 金雙圭, 앞의 논문 참조.

28) 吳仁澤, 「朝鮮後期 癸卯·甲戌量田의 推移와 性格」, 『釜大史學』 19, 효원사학회, 1995.

볼 수 있다.

甲戌量田의 이러한 양전 방식은 신라시대 이래 경작지가 아닌 토지까지도 경작지와 구별하지 않고 양안에 등록해 온 오래된 전통을 폐기한 것으로, 한국 양전의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낳은 가장 큰 요인이 토지의 개발과 그 토지의 안정화를 위한 꾸준한 영위, 그리고 토지의 희소재화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소농사회가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²⁹⁾ 갑술양전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양전 방식의 큰 변화는 소농사회의 형성에 대응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앞에서 소개한 경주 손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갑술양안에 등록된 이 가문의 한 필지당 결부수는 16세기 전반과 비교해서 반감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필지당 면적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다. 그 한 예로서 1662년에 작성된 「康熙元年月日 京畿廣州府量案 中臺面」(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을 소개한다. 이 사료는 1662년에 실시된 경기도 양전에 의해 작성된 양안을 필사한 行審冊으로 보이는데, 경자양안에 앞선 시기의 읍 양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단히 소중한 사료이다. 이 사료에는 광주부 중대면의 자호가 ‘場’字인 토지 44필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전체 결부수는 4結 86負 5束이므로 한 필지당으로는 11負 1束이 된다. 경주 손씨의 사례보다는 약간 좁은 면적이지만 역시 갑술양전과 같은 방식으로 양전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주 손씨와 광주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갑술양안과 그 후의 양안에 등록된 토지의 한 필지당 결부수는 16세기까지의 양안보다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위와 같은 양전 방식의 변경에 있었던 것이다.

4. 甲戌量田에서 庚子量田으로

1718년부터 1720년에 걸쳐서 三南지방을 대상으로 실시된 庚子量田은 조선시대

29) 미야지마 히로시, 「동아시아 소농사회의 형성」,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제2장, 너머북스, 2013.

30) 덧붙여 말한다면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갑술양전에서도 진전을 양안에 등록한다는 면에서는 그 이전의 양전 방식이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안에서 진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光武量田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마지막 대규모 양전이었다. 이때 작성된 양안은 경상도, 전라도 몇 개 지역의 양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각 토지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양안에 등록된 개별 토지에 주목해서 경지의 존재 형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까지는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다.

하나의 사례는 慶南 咸安에 세거하는 密陽 朴氏 가문의 분재기이다.³¹⁾ 이 집안에는 1703년과 1729년의 분재기가 소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토지가 양안에 어떻게 등록되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갑술양안과 경자양안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표 5〉 咸安山仁面 密陽朴氏家分財記(1703年)

員名稱	犯向	第次	等級	形態	地目	結負			夜味數
二大坪	西	433	3	直	田	14.4			
	北	434	2	方	田	1.2			
	南	437	1	圭	田	1.7			
		432	3	梯	田	11.2			
		220	2	圭	畓	1.8			1
		221	3	梯	畓	1.9			1
		222	2	直	畓	2.6			1
		665	1	直	畓	2.4			1
	東	429	3	直	田	3			
	南	431	4	直	田	7.2			
	西	443	2	直	田	1.1			
	東	447	1	梯	田	1.4			
	東	449	1	直	田	3.7			
	西	455	1	直	田	2.9			

31) 이 분재기에 대해서는 金錫禧·朴容淑, 「朝鮮後期の 分財記-咸安 山仁面 朴氏家の 事例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 이화여자대 한국문화연구원, 1998 참조.

量田史의 재검토

		706	3	直	畓		18.1內		7
三大坪		113	2	直	畓	8.2			2
		151	3	圭	畓	1.9			1
外杜谷	西	400	3	直	畓	11.8			2
	北	500	3	直	畓	3			1
	北	501	3	直	畓	3.2			1
內杜谷	西	555	3	直	畓	10.6			3
咸安安仁	東	99	2	梯	田	21.2			
	東	111	1	梯	田	5.7			
	西	133	3	直	田	3.5			
	南	134	2	直	田	10.4			
	東	138	2	梯	田	4.8			
	北	139	1	直	田	8.3			
	東	141	1	直	田	3.4			
二爾物草	北	332	3	直	田	23	46內		
	北	687	5	直	田	12.5	102.1內		
	西	177	2	方	畓	7.1			1
	南	337	2	直	畓	7.6	15內		3
	北	596	2	直	畓	9			2
	東	597	2	直	畓	16.5			3
柳等浦		306	5			3.8			
	西	305	5	直	田		59.7內		
	東	58	2	梯	畓	7.4			2
	東	88	2	直	畓	4.9			1
仇音谷		512	5	直	田	10.3	20.6內		
外代山梨木		37			田	4			
		38			田	10.2			
阿見	西	26	1	直	田		135.8內		
白只	南	15	6	直	田		135.7內		
仇伐	南	61	4	直	田	15.9			

	南	62	4	直	田	59.8			
	東	63	5	直	田	14.4			
長朴		197	4	直	田	5.6	82.9內	反畚	
昌原西面大峯	東	79	5	直	田	16.4		反畚	5
	北	116	4	直	田	6.4	16.4內	反畚	
	西	118	5	直	田	1.3		反畚	1
	東	121	4	直	田	5.3		反畚	
	東	3	3	直	田	9.1	45.8內		
	北	150	6	直	田	1.8			
	北	151	3	直	田	3			
	西	152	3	直	田	2.1			
	東		5	直	田	22			
	西	329	2	圭	田	5.1	10.1內	道越	
	北	333	2	直	垞田	8	53.2內		
	北	444	5	直	田	6.7	48.7內		
	北	235	4	直	田	1.7			
	北	236	6	直	田	0.4			
	東	24	5	直	田	7.8	63內		
	西	249	6	直	田	2.1			
	西	250	6	直	田	2.9			
大峯員無主田秩	南	155	6	直	田	4			
	西	268	6	直	田	2.1			
	北	303	5	直	田	1.8			
	南	383	3	直	田	0.7			
	西	266	6	直	田	0.9			
	西	281	6	直	田	2			
	南	341	6	直	田	2.7			
	東	354	6	直	田	0.5			
	西	300	6	直	田	0.9			
	東	345	6	直	田	0.2			

量田史의 재검토

	北	358	6	直	田	1.5			
	西	381	6	直	田	0.2			
大峯員反川畚秩	東		4	直	田	16.2			
	南	12	6	圭	田	0.4			
小峯		148	3	直	田	14			
	北	101	3	直	田	20.6			
小峯員仍陳田秩	西	111	3	直	田	5.3			
	南	217(2作)		直	田	3.3			
果川下西面安陽	習字	21	6		田	2	9.3內		
	積字	20	5		畚	3			
		21	5		畚	3			
	因字	402	6		畚	2			
					(합계)	553.9			
					(평균)	6.75			

출전: 金錫禧·朴容淑, 「朝鮮後期の 分財記」

1703년에 작성된 분재기에는 전답 합쳐서 86필지가 나오는데 한 필지당 결부수는 6.75負이다(〈표 5〉). 경주 손씨의 사례, 광주부 중대면의 사례와 비교해서 필지당 면적이 좁은 것 같은데, 높은 등급의 토지가 비교적 많은 것(이 분재기에는 각 토지의 등급도 표시되어 있다)과 관련된 현상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1729년의 분재기에는 62필지가 나오고 필지당 결부수는 6.78負로, 갑술양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표 6〉). 그래서 이 집안의 경우 갑술양전에서 경자양전에 이르는 사이에 경지의 세분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咸安山仁面 密陽朴氏家分財記(1729年)

員名稱	字號	第次	形態	地目	結負		夜味數
安仁	川	77	直	田垵	10.4		
		81	梯	田	4.8		
		85	直	田垵	5.4		
		42	梯	田	4	8內	

		75	直	田	1.9		
		76	直	田	3.7		
		42	梯	田	4	8內	
		83	梯	田	3		
三大坪	男	61	梯	畚	12.4		3
	良	19	梯	畚	4.2	一等	
	貞	54	直	田	3		
		56	梯	田	5.8		
	放	9	直	畚	7.4		1
	貞	69	直	田	1.4		
		72	梯	田			
		73	直	田	5.7		
		75	直	田	2.5		
	效	5	梯	畚	6.2		1
		46	梯	畚	1.7		1
		50	直	畚	4.3		1
三大坪	彼	20	直	畚	1.6		1
		22	直	畚	6.6		1
		23	直	畚	9.4		1
二爾勿草	臨	76	直	畚	2.7		1
		77	直	畚	2.3		1
	深	4	梯	畚	5		1
		5	梯	畚	11.7		1
	夙	30	直	畚	5.9		
	命	8	直	田	8.5	17.1內	
	興	10	直	田	6.4	12.8內	
	命	8	直	田	8.6	17.1內	
	興	10	直	田	6.4	12.8內	
加沙	馨	119	直	畚	4		1
	蘭	49	梯	畚	5.3		1
梨木	輩	59	梯	田	13.7	25.6內	

量田史의 재검토

		59	梯	田	11.9	25.6內	
		58	直	田	1.8		
阿見	鍾	1	直	田	13.1		
長朴	宜	4	直	田	2		
		5	直	田	2		
大池	似	56	直	畚	4.3		1
		78	梯	畚	20.9		4
昌原大峰	遐	4	直	田	16.2		
		6	直	田	2.9		
	賓	52	圭	田	5.1	道越	
	通	52	直	畚	18.4		1
		54	直	畚	11.5	23內	5
		66	直	畚	17.3		4
	賓	51	直	田	7.6		
	王	152	直	田	9.9		
	通	54	直	畚	11.5	23內	5
		67	直	畚	20.1		3
	率	131	直	畚	2.5		1
	壹	6	直	畚	2.2		2
方	良	63	圭	畚	10.4	14.1	1
		64	直	畚		6.8	3
		63	圭	畚	10.4	14.1	1
		64	直	畚		6.8	3
柳等浦	若	38	直	田	4.7		
		39	直	田	4.7		
	侯	39	直	田	4.1		
小峰	髮	62	直	田	8.2		
				(합계)	413.6		
				(평균)	6.78		

출전: <표 5>와 같음

한 가지 더 다른 사례는 김진태에 의해 소개된 것인데 그는 경상도 龍宮과 전라도 綾州, 靈光 세 지역의 경자양안을 대상으로 진전의 실태를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 세 개 지역 양안의 필지수와 결부수 통계가 제시되고 있는데,³²⁾ 그에 의하면 각 지역의 필지당 결부수는 용궁의 밭 4.84負, 논 6.58負, 능주의 밭 3.43負, 논 4.16負, 영광의 밭 12.22負, 논 9.25負이다. 지역마다, 그리고 밭과 논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6세기 이전과 비교하면 대동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영광의 1868년 양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었는데, 그때의 필지당 결부수는 밭이 8.98負, 논이 9.95負이다. 그래서 영광에서는 경자양전 이후 150년 사이에 필지당 결부수가 밭에서는 감소, 논에서는 약간의 증가가 있었던 것이다.

경자양안에는 새로운 토지의 분류로서 ‘加耕田’이 많이 등장한다.³³⁾ 가정전이란 갑술양안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 새롭게 개간된 토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토지가 경자양안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갑술양안 이후 등장하는 陳의 토지의 유래를 생각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양안에 起 상태의 토지만이 아니라 陳 상태의 토지도 등록되고 있는 이유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한 이해는 물론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경자양안에 많은 가정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개간 가능한 토지가 다 양안에 등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갑술양안과 경자양안에 나오는 대량의 陳地는 조선 전기까지의 양전에서 경지와 구별하지 않고 양안에 등록되었던 진 상태의 토지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양안에 등록되는 토지 한 필지의 면적이 좁아지는 현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기로 한다. 오인택에 의해 소개된 사실³⁴⁾인데, 慶尙左道에서는 第次(地番)가 字號를 단위로 매겨지지 않고 員³⁵⁾을 단위로 제차가 매겨져

32) 김진태, 「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규장각』 37,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33) 오인택, 「朝鮮後期 新田開墾의 성격-肅宗代 南海縣 庚子量案의 加耕田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효원사학회, 1994; 김진태, 「경자양전 시기 가정전과 진전 파악 실태-경상도 용궁현 사례」,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000.

34) 吳仁澤, 앞의 1995 논문.

35) 員이라는 것은 농지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도리’ 혹은 ‘돌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김성갑은 주장하고 있다. 김성갑,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82면 참조.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경북 안동의 명문 가문인 義城 金氏 川前派 소장의 고문서 중에 경자양전 때 일어났던 토지 분쟁에 관한 立案이 존재한다.³⁶⁾ 이 분쟁은 갑술양안에 김씨 집안이 소유하는 노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었는데, 그 노의 후손이 자기들의 소유지로 주장하면서 김씨 쪽이 제출한 문서 중에 자호가 없는 토지가 있는 것을 그 증거의 하나(즉 그 문서는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로 제기하고 있다. 그에 대해 김씨 쪽에서는 당시 자호가 없는 분재기나 매매문기가 많이 존재한다고 반론하고 있다. 안동지역에서는 갑술양전 때 員을 단위로 제차가 매겨졌기 때문에 員名과 제차만으로 토지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인택은 이러한 현상이 경상좌도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위에서 소개한 함안의 밀양 박씨가 1703년 분재기에서도 자호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0번을 넘는 제차가 보이기 때문에 함안을 포함한 慶尙右道에서도 역시 員 단위로 제차가 매겨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경자양전 때에는 사라지고 경상도에서도 제차는 字號를 단위로 매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양안에 등록된 한 필지의 면적이 점점 좁아지면서 員을 단위로 제차를 매기면 400이나 500을 넘는 제차를 가진 토지가 대량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막으려고 채용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5. 庚子量田 이후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양안 등록지의 한 필지당 면적의 축소 경향은 18세기에 와서 머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庚子量田에서 180년 정도 후에 실시된 光武量田 때 양안에 등록된 토지의 한 필지당 면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⁷⁾

36) 이 입안에 대해서는 沈羲基, 「18세기초 安東府 田畝決訟立案의 法制的 分析」, 『古文書研究』 9 · 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참조.

37) 정경임, 「광무양안을 통해 본 1890~1900년대의 영춘군」, 『중원문화연구』 18 · 19,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2; 김소라,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통해 본 광무양안의 성격-충남 한산군 창외리와 경북 경주군 구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0,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2014.

충북 영춘군: 논 7.80負(1477尺), 밭 5.52負(1470尺)

충남 한산군: 논 999坪, 밭 213坪

경북 경주군: 논 440坪, 밭 212坪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조사된 한 필지 당 면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各道地目別筆數及面積表」,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918년, 672면에서 산출).

논 0.25町步(경남의 0.17町步에서 평남의 0.53町步로 분포)

밭 0.29町步(경남의 0.12町步에서 평북의 0.56町步로 분포)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18세기 이후 양안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한 필지당 면적은 17세기 말까지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소농사회의 형성이 이러한 장기적인 변화 추세를 낳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한 것 같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토지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경작지 개발의 움직임, 재산 상속제도의 변화, 농업 기술의 발달, 양전과 토지조사 때의 필지 구분의 방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개별 토지의 변동은 끊임없이 이어졌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 필지당 평균 면적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이후에는 그때까지와 다른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토지 정리, 토지 개량사업 등 필지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즉 한 필지당 면적이 계속 축소해 온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반대 방향의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한편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택지의 증대, 토지매매의 증가 등 필지당 면적을 축소시키는 요인도 동시에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하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Ⅳ. 토지 국유 · 사유론의 대립을 넘어서-결론을 대신해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 이우성의 토지 사유론을 실마리로 삼아서 토지 소유를 둘러싼 논쟁을 새로운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토지 자체에 주목해서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구명하는 것과 동시의 그러한 변화를 낳은 요인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고찰을 시도했다.

이 논문에서 밝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과는 갑술양전을 전후해서 양전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에 의해 신라시대 이래 오래도록 이어져 왔던 양전 방식, 즉 경작지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비 경작지까지도 같이 양전해서 한 필지로 양안에 등록하는 방식이 폐기되고 경작지와 비 경작지를 엄밀하게 구별해서 파악하고 비 경작지에 대해서는 지세를 면제한다는 새로운 토지 파악 방식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낳은 요인은 경지의 안정화, 경지 개발의 진전, 토지의 희소재화 등등 일련의 변화, 즉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농사회의 형성이었다고 생각된다.

만약 위와 같은 본고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신라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로는 토지 국유와 사유를 둘러싼 견해의 대립이고 둘째로는 국가의 收取제도에 관한 문제다.

토지 국유론과 사유론의 대립은 한국 역사학계의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이지만 소유의 대상인 토지 자체에 대해서는 국유론자도 사유론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의 상황은 농업 생산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똑같지는 않았으며 그에 대응해서 국가의 토지 파악 방식 역시 본고에서 밝힌 것처럼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특히 인구에 비해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했던 시기와 인구 증가 때문에 토지가 희소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시기에 있어서 소유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해야 된다. 한국의 경우는 16세기가 그러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분재기에 토지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도, 토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시기도 다 16세기 이후이다.

이런 큰 변화를 시야에 넣으면 16세기 이전에는 토지의 국유, 사유 여부는 별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서 지급된 과전은

國役 부담자에 대한 특권 부여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거기에 포함된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국가에 의해 할당된 토지로서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 단순히 국유인가 사유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토지가 희소재화하는 시기에 앞서서 한국에서는 1424년에 토지 매매가 합법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도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우성이 1965년에 발표한 두 개 논문은 일본, 중국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양국에 토지 사유가 있었으면 한국에서도 있었을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는데,³⁸⁾ 기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토지 매매가 합법화되었다. 일본에서는 토지 매매의 합법화는 明治維新 이후로, 에도(江戸)시대에는 토지 매매가 금지되고 있었다. 이우성이 토지 사유설을 주장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였던 인식, 즉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이 토지 국유를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인식 역시 전혀 잘못된 이해로서, 토지조사사업 당국자들은 토지 사유의 광범위한 존재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³⁹⁾

토지가 희소재화하고 토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16세기 이후는 토지 사유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요인이었다.⁴⁰⁾ 그러나 토지 사유를 역사 발전의 지표로서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유론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도 토지 소유를 둘러싼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38) 두 논문의 집필 동기에 대해 이우성은 후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에 사유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걸 전제하고 살펴보니 토지공유·국유라고 볼 수 없겠더라 말이야. 그것이 ‘고려의 영업전’이고 ‘신라시대의 왕토사상과 공전’이라는 논문이다.” 이우성, 「문·사·철을 겸비한 실천적 지식인」,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2000, 31~32면.

39) 일본 근대 민법학의 개척자이자 한국 부동산법조사회 회장으로서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습 조사를 주도한 우메 겐지로(梅謙次郎)는 당시 한국의 토지소유권에 대해 “널리 소유권이라 칭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 인민에게 적어도 수백 년 전부터 인정되어 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不動産ニ關スル韓國慣習法一般」, 『法曹記事』 18-6, 法曹會, 1908)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의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준 가와카미 쓰네로(川上常郎)의 『土地調査綱要』, 度支部, 1909에서도 사적 토지 소유권의 광범위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40) 조선 후기에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 사건이 생겼는데, 이러한 현상에 관한 연구로서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와 청송 실무」, 『법학연구』 60(1),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9 및 임상혁, 「조선시대 무주지 개간을 통한 소유권 취득」, 『土地法學』 31(1), 한국토지법학회, 2015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수취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수취제도와 관련해서 1結당 생산량과 국가 수취량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위에서 밝힌 것 같은 양전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양안에서 1結의 토지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경작지가 아닌 토지가 많이 포함되고 있었다면 그 토지에서 농업 생산물만이 수취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농업이라는 생업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계절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농업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는 1년 중에 농업을 할 수 없는, 혹은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경작자부터 수취하려고 하면 농업 생산물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생산물과 노동력의 수취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⁴¹⁾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다. 크게 보면 조선 후기의 大同法 실시에 의해서 처음으로 농업 생산물을 위주로 하는 국가 수취체제가 성립했던 것이며, 소농사회의 형성, 양전 방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변화였다고 말할 수 있다.

투고일: 2023.01.30

심사일: 2023.02.27

게재확정일: 2023.03.02

41) 국가가 結을 단위로 부과하는 부담 중에 농산물만이 아니라 노동력과 다양한 생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김건태, 「결부제의 사적 추이」, 『大東文化研究』 10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참조.

참고문헌

- 李樹健 편저, 『慶北地方古文書集成』, 영남대 출판부, 1981
- 정구복 외, 『朝鮮前期古文書集成: 15世紀篇』,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118 慶州 慶州孫氏古文書: 正書篇』,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 『康熙元年 月 日 京畿廣州府量案 中臺面』, 고려대 도서관 소장
-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朝鮮總督府, 1918
- 川上常郎, 『土地調査綱要』, 度支部, 1909
- 미야지마 히로시,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공부』, 너머북스, 2013
- 李喜寬, 『統一新羅土地制度研究』, 일조각, 1999
- 吉田孝, 『律令國家と古代の社會』, 岩波書店, 1983
- 곽종철 · 이진우, 「우리나라 논유구 집성」, 『韓國의 農耕文化』 6, 경기대 박물관, 2003
- 김건태, 「경자양전 시기 가점전과 진전 파악의 실태-경상도 용궁현 사례」, 『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000
- _____, 「결부제의 사적 추이」, 『大東文化研究』 10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 金錫禧 · 朴容淑, 「朝鮮後期の 分財記-咸安 山仁面 朴氏家の 事例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 이화여자대 한국문화연구원, 1998
- 김성갑,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소라,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을 통해 본 광무양안의 성격-충남 한산군 창외리와 경북 경주군 구정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론』 60, 서울대 인문대학 국사학과, 2014
- 金雙圭, 「朝鮮前期의 陳田收稅問題」, 『歷史教育』 66, 역사교육연구회, 1998
- 金容燮, 「土地制度의 史的 推移」, 『韓國中世農業史研究-土地制度和 農業開發政策』, 지식산업사, 2000
- 南豐鉉, 「淨兜寺造塔形止記의 解讀」, 『古文書研究』 12, 한국고문서학회, 1997
-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와 청송 실무」, 『법학연구』 60(1),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9
- 沈義基, 「18세기초 安東府 田畝決訟立案의 法制的 分析」, 『古文書研究』 9 · 10, 한국고문서학회, 1996
- 吳仁澤, 「朝鮮後期 新田開墾의 성격-肅宗代 南海縣 庚子量案의 加耕田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18, 효원사학회, 1994
- _____, 「朝鮮後期 癸卯 · 甲戌量田의 推移와 性格」, 『釜大史學』 19, 효원사학회, 1995

- 李榮薰, 「開仙寺 石燈에 새겨진 8~9세기 新羅의 토지제도」, 『古文書研究』 50, 한국고문서학회, 2017
- 이용현, 「慶山 所月里 文書 木簡의 성격-村落畓田 基礎 文書」, 『木簡과 文字』 27, 한국목간학회, 2021
- 이우성, 「18世紀 서울의 都市의 樣相-燕巖學派·利用厚生學派의 成立背景」, 『鄉土서울』 17,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3
- _____, 「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大崇福寺碑 및 鳳巖寺 智證碑의 一考」, 曉城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刊行委員會編, 『佛教史學論叢』, 중앙도서출판, 1965
- _____, 「高麗의 永業田-永業田의 私有的 性格」, 『歷史學報』 28, 역사학회, 1965
- 李仁在, 「新羅統一期の 結負制」, 『東方學志』 10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8
- 李載鸞, 「16세기 量田과 陳田收稅」, 『朝鮮前期 經濟構造研究』, 숭실대 출판부, 1999
- 이형원, 「百濟 漢城期の 水田에 대하여-화성 송산동 농경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 10(2), 중부고고학회, 2011
- 임상혁, 「조선시대 무주지 개간을 통한 소유권 취득」, 『土地法學』 31(1), 한국토지법학회, 2015
- 정경임, 「광무양안을 통해 본 1890~1900년대의 영춘군」, 『중원문화연구』 18·19,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2
- 鄭旻日, 「麗末鮮初의 埋香碑 研究」,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 하시모토 시게루, 「경산 소월리 목간의 성격에 대한 기초적 검토-신라 촌락문서와의 비교 및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木簡과 文字』 29, 한국목간학회, 2022
- 洪順權, 「高麗時代의 柴地에 관한 고찰」, 『震檀學報』 64, 진단학회, 1987
- 梅謙次郎, 「不動産ニ關スル韓國慣習法一般」, 『法曹記事』 18-6, 法曹會, 1908
- 都出比呂志, 「古代水田の二つの型」, 『展望アジアの考古學: 樋口隆康教授退官記念論集』, 新潮社, 1983

Reconsidering the History of Land Survey

— The Private Land Ownership Theory of Lee, Woo-sung

Miyajima Hiroshi

In the early stage of modern Korean academia, Woo-sung Lee argued that private land ownership even existed in the Silla and Goryeo periods and his claim is now becoming a mainstream view.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state-owned or private land systems, but few interests have been paid to the land itself, which is the object of ownership, in Korean history. Land chang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meaning vari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and land. Land change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ts economic meaning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population.

This paper figures out how land had been changed with the periods through the state's land survey systems. In historical sources of the Silla and Goryeo periods, there are a lot of lands larger than 1 Gyeol. This is because when the state measured the land, not only the agricultural land but also the idle land around it was identified as one section. In addition, this method was abolished only after the land survey in 1634, the Joseon Dynasty. The reason why the land measuring system changed like this is that the land had stabilized and idle land had disappeared due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technology. The second reason was the rising value of land following the population increase.

The issue of land ownership system should also be fundamentally reviewed with changes in land. Before the 16th century, when the population was small and idle land prevail, it was meaningless to distinguish land by state-owned or private. In addition, the perspective of viewing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land ownership system in relation to the path of historical development should be discarded.

Key Words : Woo-sung Lee, land survey, land ownership, state-owned ownership, private ownership, population